

■ 대안학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 [별표 1] <개정 2022. 7. 5.>

교사의 기준면적(제3조제2항 관련)

(단위: m²)

학 교	학생수별 기준면적	
	초등학교 과정 대안학교	120명 이하 3.5×총학생정원
중학교 과정 대안학교	60명 이하 7×총학생정원	61명 이상 210+3.5×총학생정원
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	60명 이하 7×총학생정원	61명 이상 180+4×총학생정원

비 고

1. 총학생정원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.
2.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 급 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.